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7호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17호(2021.7.29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1호(2022.1.13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제1항 및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건설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신축공사
3.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

[기정]

명 칭	대표자	주 소
(주)국민은행 (교림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7호의 신탁업자)	허 인 (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신탁대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

[변경]

명 칭	대표자	주 소
(주)국민은행 (교림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7호의 신탁업자)	이재근 (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신탁대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

4. 사업의 시행기간 :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~ 2025년 01월 03일 (변경없음)

5. 사업개요

가. 대지위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외 2필지

나. 대지면적 : 3,093㎡

다. 건폐율 : 59.99% (건축면적 : 1,855.39㎡)

라. 용적률 : 961.84% (용적률산정용 연면적 : 29,749.62㎡)

마. 용 도 : 공동주택(공공임대 137세대/민간임대 244세대), 근린생활시설

바. 규 모

－ 기정 : 1개동, 지하7층/지상27층, 연면적 44,760.05㎡

－ 변경 : 1개동, 지하7층/지상27층, 연면적 44,802.95㎡

사. 의제처리사항 : 「건축법」 제11조 건축허가, 상수도공급신청, 배수설비설치신고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8호

**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/
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8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1.12.01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3일
서울특별시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 고
신 규	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	성동구 마장동 784번지 일대	38,866.05 (38,711.20)	-

※ 본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
※ () : 본 정비구역에 대한 현황측량 후 면적으로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것 [붙임 8]
- 구역면적 : 38,711.20㎡ [획지면적 37,441.30㎡, 도로(정비기반시설) 1,176.90㎡, 도로(건축법) 93.00㎡]

2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고
총 계		38,866.05	100.00	
공동주택용지	획지1	37,667.39	96.92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정비기반시설	도 로	1,103.46	2.84	
건축법상도로		95.20	0.24	